

명 태조 홍무제의 대(對) 고려 금왜(禁倭) 요구와 고려의 대응 - 공민왕 22(1373)년 10월의 왜구 대책의 배경을 중심으로 -

이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국문초록

본고는 공민왕 22(1373)년 10월의 수군 재건을 통한 적극적인 왜구 대응이 고려 말 왜구 금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 성과에 입각, 고려 조정이 이때 갑자기 정책을 전환한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북으로 도주한 원(北元) 및 새로 중원의 패자(霸者)로 등장한 명과 고려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공민왕 조정은 친원(親元)이나 친명(親明)이나, 하는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홍무제는 고려의 이러한 대명(對明) 자세에 불만을 품고 침공 위협을 반복했다. 고려는 이러한 홍무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가 여러 차례 홍무제가 제시한 바, 왜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한다. 실례로, 홍무제는 함선 300~500척을 건조해 해상에서부터 왜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요구했는데, 고려는 공민왕 22(1373)년 10월, 마침내 수군 재건에 착수한다.

그러나 최영이 중심이 되어 착수한 무리한 수군 재건 작업은 곧바로 당시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러자 공민왕은 때마침 이희와 정지(준제)의 합리적인 수군 재건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시한, 단순히 바다와 배 조종에 익숙한 연해도서민을 수군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해전에 능숙한 왜구에 대응하기에 부족했다. 이에 그동안

* yiyong@mail.knou.ac.kr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화약 제조에 애써왔던 최무선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다. 고려 조정은 왜구 대응에 화약과 화포 등 병기 사용을 주장하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기로 하고 명에 화약과 화포의 지원을 요청한다.

자신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미온적이고 애매한 태도로 임하자, 실망하고 분노하던 홍무제는 고려의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에 크게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리고 중서성의 화약 지원 반대를 뿌리치고 지원하라고 명령한다. 노련한 고려 외교의 승리였다.

이러한 대명 외교의 성과가 있는 직후, 공민왕은 암살당한다. 그렇지만 최무선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홍무제의 화약과 화포 지원을 이끌어 낸 결과, 고려는 드디어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이후 왜구와의 여러 차례 해전에서 승리를 거듭해 한반도 연해에서의 제해권을 회복한다. 이처럼 고려의 대명(對明) 외교는 대일(對日) 외교의 성과 못지않게 왜구 금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왜구의 쇠퇴는 달리 말하면 규슈 남조 세력의 군사력 약화를 의미했다. 요시노(吉野) 조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규슈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세가 사라지자, 더 이상의 항전은 무의미했다. 이처럼 고려의 대명 화약 외교의 성과는 60여년 동안 이어진 남북조 내란의 종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주제어 ■ 명태조 홍무제의 고려에 대한 왜구 금압 요구, 공민왕 대의 수군 재건, 육전론과 수전론 논쟁, 최무선의 화약과 화포를 이용한 왜구 금압책

I 서론

고려 공민왕 대(1351-1374)는 원명(元明) 교체기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일대 전환기에 해당한다. 공민왕 5(1356)년, 반원 자주 개혁을 실행하자, 원나라와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공민왕 8(1359)년 12월에는 홍건적 4만여 명, 다음 해(1360년) 9월에는 20만 명이 침입해왔다. 그리고 충정왕 2(1350, 경인)년 2월부터 왜구도 한반도 남해안 일대를 다시 침범하기 시작한다.

흥건적의 침입은 그 규모가 컸지만 2년여 만에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왜구는 침입의 규모와 빈도에 있어서 기복은 있지만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고려를 괴롭혔다. 고려 왕조는 왜구의 침구 빈도와 그 규모,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했다.(이영, 2012) 그런데 왜구를 진정(鎮靜)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고려의 외교와 군사적 대응이었다.¹⁾

그러나 경인년(1350) 2월 이후 왜구 침구에 대해 고려 조정이 취한 대책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초의 금왜요구(禁倭要求) 사절 파견은 경인년에서부터 17년째가 되는 공민왕 15(1366)년이었고 수군 재건을 통한 적극적인 군사 대응은 24년째가 되는 공민왕 22(1373)년 10월부터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의 왜구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우왕 3년(1377) 10월에 화통도감(火通都監)을 설치해(『고려사』 권제133. 열전 권제46. 우왕 3년 10월조.),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함선에 선적해 해전에서 왜구를 격퇴한 것이었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다.²⁾

-
- 1) 일반적으로 고려의 화약 무기 사용을 통한 군사적 대응이 왜구 진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학계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려의 대일 외교의 역할에 관해서는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이에 최초로 고려의 대일 금왜 외교가 왜구의 금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이영 「고려 우왕 원년(1375)의 나훈유 일본 사행의 외교적 성과」(『한국 중세사 연구』47호, 2016년)이다. 아울러 고려 수군의 화약 무기 사용과 왜구 금압, 그리고 남북조 내란의 종식 등과의 관련에 관해서는 동 「진포구 · 남해 관음포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한국중세사연구』제64호, 2021년)을 참조.
 - 2) 필자는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상황과 그에 대한 고려 조정의 수군 대책의 효과를 ① 왜구의 침구가 시작된 경인년(1350) 이후 고려가 제대로 된 수군 조직을 갖추지 못한 시기, ② 수군의 재건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화통도감이 설치되기 이전 시기, ③ 화통도감 설치 이후의 시기 등 3시기로 나누고, 또 고려군과 왜구와의 해상 충돌을 '해전', '왜구의 기습 공격' '해상 조우'로 분류해 각시기 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화통도감의 설치 이후 고려 수군이 왜구의 선단에 대하여 과거의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며 해전에서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왜구들에게 빼앗겼던 한반도 연해 지역에서의 제해권(해양 지배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뒤이어 공양왕 원(1391)년에 이루어진 대마도에 대한 공격도 이러한 고려 수군의 전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에서의 해양 지배권 장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 지배권의 장악」(『동북아 문화연구』48집, 2016년).

그런데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부터 수군으로 적극적으로 왜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주 이른 시기에 이미 제시된 바 있었다. 즉 공민왕 2 (1352)년에 이색이 왜구 대책으로 건의한 것이 그것이다.³⁾

그럼에도 공민왕 조정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수군 재건에 착수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민왕 조정이 원나라와 흥건적, 그리고 새로 중원의 패자로 등장한 명나라의 침공 위협에 대한 방어를 왜구보다 우선 한다고 하는, 소위 ‘북방중시(北方重視)’ 정책을 들 수 있다.⁴⁾ 고려가 제한된 병력으로 북쪽 국경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것으로도 부담스러운데, 동시에 한반도의 긴 해안선을 수시로 침구하는 왜구도 효율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려는 어느 한쪽에 국방력을 집중시켜야 했다. 따라서 당시 고려가 취한 북방중시 정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최초의 금왜 요구 사절의 일본 파견이 지체된 것도 같은 이유였다(이영, 2007).

만약 그렇다면 공민왕 22(1373)년 10월이 되어서 수군을 재건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왜구 대응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일본 규슈의 군사 정세다. 즉, 전년도인 공민왕 21(1372)년부터 남조(南朝)와 북조(北朝)의 군대가 규슈(九州) 다자이후(大

3) “공민왕(恭愍王) 원년(1352)에 이색(李穡)이 북상(服喪) 중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상중에 있는 신하 이색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의 계획은 불과 두 가지로 육지에서 지키는 것과 바다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중략) 대개 육지를 지키고 바다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여겨 쉴 수 없는 만큼 쳐들어올 것입니다. 바다에서 싸우고 육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혹 나가더라도 불의에 쳐들어와 해가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사』 권제 115. 열전 권제28. 이색.

4) 이는 우왕 3(1377)년 9월, 정몽주가 금왜요구사절(禁倭要求使節)로서 일본행이 결정되었을 당시의 『고려사』의 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宰府)를 두고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 전투 수행에 필요한 병량(兵糧)을 위시한 물자 및 노동력 약탈을 목적으로 침구하는 왜구 규모 및 빈도 역시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영, 2006)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민왕 21(1372)년이 되면서 왜구의 침구가 격화되자, 공민왕 22(1373)년 5월에 간관(諫官) 우현보가 ‘함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재건할 것’을 건의했지만, 공민왕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⁵⁾ 그런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자, 급변(急變)해 정책을 전환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공민왕 22년 10월의 수군 재건 방침 채택은 단순히 왜구 사태가 갑자기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한 국가의 군사 정책은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내정 및 외교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수군 재건 방침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초월해 당시 고려의 내정 및 외교 정책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북방 중시책’으로 인해 왜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민왕 22년 10월의 수군 재건의 시작은 그때까지의 ‘북방 중시책’에서 ‘남방 중시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5) “나라에 경인년(1350) 이래로 왜적이 침략하여 연이어 군사를 내어 붙잡으려 해도 잡거나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의논하는 자[議者]들이 이르기를, ‘적은 배를 잘 타니 수전(水戰)은 불가하다. 만약 함선(艦船)을 건조한다면 우리 민만 거둬서 피곤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으며 수적(水賊)이 육지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기세로 보아 명확합니다. (중략) 마땅히 함선을 만들고 병장기를 엄히 점검하여 조류를 타고 멀리 나아가 요충지를 막는다면 적이 비록 물을 잘 안다고 해도 어찌 능히 <우리의 함선을> 날아서 넘어가겠습니까? 만약에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면 적을 사로잡고 승리하여 <왜적이> 소탕하는 것도 반드시 가능할 것입니다. (중략) 왕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내렸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고려사』 열전 권제28. 우현보.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에 입각해, 공민왕 22년 10월의 수군 재건을 보다 폭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고찰은 왜구 문제를 단순히 대일(對日) 관계 또는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당시 공민왕 조정이 안고 있었던 내정 및 외교와 연관지어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고에서는 준비 부족과 지면 제약 등의 이유로, 고려의 내정과 관련해서는 차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본 고에서는 주로 명과의 외교 교섭에 한정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II 1.2차 금왜 요구와 고려의 대응

홍무제는 고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왜구 금압을 요구해왔다. 그가 고려에 대하여 최초로 왜구 문제를 언급한 것은 공민왕 19(1370)년 5월로 귀국하는 고려 사신 편에 보낸 조서(詔書)였다.(『고려사』 권제42. 공민왕 19년 5월조.) 조서에는 고려의 국정에 대한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담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 공민왕은 홍무제의 왜구 대비 요구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 같지 않다.⁶⁾

홍무제가 두 번째로 왜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초의 왜구 언급에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공민왕 21(1372)년 9월이다. 즉 약 다섯 달 전인 같은 해 4월에 고려가 명나라에

6) 당시 사료를 검토해본 결과, 홍무제는 '불교에 너무 경도되지 말 것' '제사를 존중하고 거행할 것' '왜구에 대비할 것' '요심(遼瀋) 지역의 복원 잔여 세력에 대하여 군비를 갖출 것' 등을 지시했는데 이러한 지시에 공민왕이 따른 것은 오직 '제사를 존중하고 거행할 것' 밖에 없었다.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조만간 별도의 기회를 빌리고자 한다.

탐라 토벌을 요청하자(『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4월 임인 (25)일조.), 홍무제가 이를 허락하는 조서에 실려있다. 다음 <사료 1>을 보자.

1. 임인. 장자온·오계남 등이 돌아왔다. 명 황제가 고려 국왕에게 약재를 내려주었고, 친히 장자온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작년에 그대의 나라가 탐라 목자(牧子)의 일로 표문을 바친 적이 있다.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이 탐라 목자들은 원조(元朝)의 달달인(達達人)과 연계되어 본시 목양(牧養)을 업으로 삼고 별도로 농사를 지을 줄은 모른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탐라에서 나고 자라 탐라 땅에 익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중략)

㉢이번에 이들이 또한 이처럼 난을 일으켰단 말인가? 내가 지금 국왕에게 글을 보내니 너희들도 고려에 가서 국왕에게 상세히 나의 말을 상세히 설명하라. ㉣그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모두 죽이고 사로 잡아라! 내가 듣기에 ㉤그대들 나라에서는 왜구들이 마음대로 연해를 약탈하여 인민들이 멀리 도피하려고 하는데도 진압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왜구가 바다를 건너와서 소란을 일으키니 우리의 연해 수어관(守禦官)에게 명하여 적선 13척을 사로잡았다. ㉧만약 탐라 목자가 이 도적과 함께 서로 합하여 한 곳에 있으면 죽이고 사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또 듣기에 여진이 당신들의 동북쪽 지역에 자리하면서 예로부터 용맹은 빼어나지만 분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 너희들이 가서 국왕에게 신경 써서 방비하라고 전하라.

㉩또한 들으니 당신의 국가는 의혹이 크다고 하는데, ㉪예로부터 천하는 중국과 외국이 있고 고려는 바다 밖의 나라로 스스로 와서 중국과 교통하면서 사대의 예를 잃지 않고 본분

을 잘 지키고 있다. 하물며 조빙의 예를 일찍이 빠트린 적이 없는데 무슨 의혹이 있겠는가? ㄱ) 옛날에 수 양제(楊帝)와 같이 황망한 임금들이 영토를 넓히고자 병사를 무리하게 일으켜서 후세의 비웃음을 받고 말았으니, 내 마음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그대들은 국왕에게 가서 명명백백히 설명하라.”라고 하였다.(『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9월 임인(18) 일조.)

여기서 홍무제는 북원의 잔여 세력인 탐라와 왜구를 자국 국방의 큰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의 탐라 토벌에 대하여 홍무제는 위의 ‘탐라 목자들이 몽골계(達達) 사람들인 것(㉑)’, ‘탐라에서 출생해 그곳 지리에 밝은 것(㉒)’, ‘우려했던 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㉓)’, ‘만약 탐라 목자들이 왜구들과 연합하면 이를 토벌하기 어려울 것(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죽이고 사로잡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㉕).’

이어서 ‘고려가 왜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㉖)’, ‘그중 일부가 바다를 건너 중국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를 우리(명)는 잘 막아냈다(㉗).’고 해 자국의 군사력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한편, 왜구들이 자기 나라까지 침입해오는 사태의 책임을 고려에게 묻고 있다. 즉 홍무제는 왜구 침입의 1차적인 책임은 일본에게 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고려가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며 2차적인 책임을 고려에게 돌리고 있다(㉘). 그리고 홍무제는 여진족에 대한 방비 책임까지 고려에게 지우고 있다(㉙).

더 나아가 홍무제는 고려가 자국을 믿지 못하고 의혹을 품고

있음을 지적한 뒤(①), 고려가 ‘사대의 예를 잃지 않고 본분을 잘 지키고 있으며 조빙의 예를 빠트린 적이 없으니’(②), 명나라에 대하여 의혹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 뒤, 과거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한 사례를 들어, 이를 비난하면서도 은근슬쩍 ‘고려가 잘못 처신하면 나도 너희 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③). 이는 위에서 ‘사대의 본분과 예’ 즉 자신이 제시한 여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려를 침공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본분’ 중에 압록강 북안의 복원 세력은 물론 같은 계통인 탐라 목자들에 대한 정벌, 그리고 왜구 방어에다가 여진족에 대한 방비 등, 자국의 국방과 관련이 있는 자신의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홍무제의 두 번째 금왜 압력을 포함한 지시에 대하여 공민왕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첫째, 고려는 홍무제의 탐라 정벌 지시가 있고 약 1년 8개월 뒤인 공민왕 23(1374)년 5월 탐라 토벌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둘째, 여진족에 대해 고려가 특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여진족이 특별히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 사료도 없다.

셋째, 탐라 세력과 왜구의 연합 가능성에 관한 홍무제의 우려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⁷⁾

넷째, ‘고려의 명에 대한 경계’ 지적에 공민왕은 중국 황제의 대궐을 향해 하례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는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7) 이러한 홍무제의 우려는 결과적으로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왜구는 그 뒤, 16세기 말 임진왜란 전까지 이어졌지만 탐라(제주)인들과 왜구의 연합이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사』 권제67. 공민왕 21년 11월조.) 명에 사은사(謝恩使)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1월 신미(28)일조.)와 사은표(謝恩表)를 보내며(『고려사』 권제67. 공민왕 21년 11월조.) 탐라의 말 50필을 바치는 등(『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1월 임신(29)일조.) 친명(親明)의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다음 해 2월 3일, 북원에서 조서(詔書)를 보내오자, 공민왕은 사람을 보내 사신을 살해하고자 했지만, 신하들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사신을 살해할 것, 억류해 북원으로 돌려보낼 것, 경사(京師) 즉 명의 수도인 남경으로 잡아서 보낼 것 등 세 가지 방책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신하들의 의견은 모두 다 북원 송환으로 기울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2월 을해(3)일조.) 그리고 열흘 뒤인 13일, 북원 사신이 돌아갈 때 고려는 모시 배를 보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2월 을유(13)일조.) 이러한 고려와 북원과의 접촉이 명에도 알려졌는지, 5일 후 2월 18일, 고려 사신이 명으로 갈 때,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하라며 육로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⁸⁾

이처럼 공민왕의 친명적인 자세는 확고했지만, 조정 여러 신하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고려 조정의 북원에 대한 애매한 입장이 명의 의혹을 샀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섯째, 왜구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고려 조정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음의 <표 1>을 보자.

8) “장자온이 정료위에 이르니 총병관(摠兵官)이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성지(聖旨)에 고려 사신은 단지 바닷길로 조경(朝京)하라 하였습니다.”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2년 2월 경인(18)일조.

<표 1> 공민왕 21(1372)년 10월의 왜구 관련 공민왕의 대응

일	왜구 관련 주요 사건 및 공민왕의 대응
17일	갑인(왕이) 친히 5군을 거느리고 승천부(昇天府)로 출정하여 머물렀다.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0월 갑인일조.)
19일	임신. 망포봉(芒浦峯)에 머물렀는데, 판사(判事) 홍사조가 갑옷을 입지 않으니 왕이 노하여 그를 매질하도록 했다. 개성참군(開城參軍) 김신검이 교량 수리를 하지 않아 매질(杖)로 다스렸다.(『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0월 임신일조.)
21일	갑오 인월곶(引月串)에 머물며 불화살(火箭)을 쏘았다.(『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0월 갑오일조.)
22일	을미. 경포봉(經浦峯)에 올라 함선을 살피고, 이후 용천사봉(龍泉寺峯)에 머물렀는데, 숙위가 엄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조세관(提調官)에 장형(杖)을 내렸다. 찬성사 안사기(安師琦)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번 행차는 만유(慢遊)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행사(行師)가 어떠한가를 보고자 함이다. 경자(庚子, 1360) · 신축(辛丑, 1361)의 흉건적은 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경인(庚寅, 1350) 이래의 왜적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조정이 파천(播遷)한 지경에 이른 것은 용병(用兵)에 규율이 없고 호령에 엄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친히 행차하여도 명이 받들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제장(諸將)이 대항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경(卿)은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무리를 깨우쳐 지금부터 군령에 의탁되어 삼가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0월 을미일조.)

10월 17일-22일 사이에 공민왕은 신하들의 흐트러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강경한 행동을 취한다. 이를 반드시 왜구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공민왕이 왜구만이 아닌, 흉건적으로 안동까지 파천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홍무제의 지시가 주로 군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적이긴 하지만 최초로 고려에 대한 침공을 언급하는 등, 공민왕으로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군비 상황을 점검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1일에 인월곶에서 불화살 발사 시험을 했던 것이나 22일에 함선을 살폈다고 한 것은 당시의 군비 점검과 기강 확

립이 특별히 왜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열흘 전인 10월 8일에 있었던 다음의 왜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신사. 왜선 27척이 양천(陽川)에 들어와 3일을 머무르니 여러 장수가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웠는데, 고려군은 모두 성중애마(成衆愛馬)로서 수전(水戰)에 익숙하지 못했던 까닭에 크게 패했다. 왜적은 원수(元帥)의 기(旗)와 고(鼓)를 탈취하고는 강화도에 이르러 강화읍 사람에게 주고 갔다.(『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0월 신사일조.)

양천, 즉 지금의 서울시 양천구 일대에 왜적들의 선박 27척이 들어와 사흘을 머무르고 있어서 고려의 장수들이 가서 싸웠지만, 수전에 익숙하지 못해 참패를 당했을뿐 아니라 원수의 깃발과 북까지 빼앗기는 이중의 수모를 경험했다. 이 전투로 인해 공민왕 조정은 수전에서 왜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부터 화기(火器)를 가지고 해상에서 왜적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최무선의 건의에 최초로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⁹⁾ 그리고 그것이 공민왕이 친히 함선을 점검하고 불화살의 시험 발사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민왕의 움직임이 곧바로 수군 재건으로 이

9) “무선은 항상 (중국) 강남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곧 만나 보고 화약 만드는 법을 물었다.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대강 안다고 대답하므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의복과 음식을 주고 수십 일 동안 물어서 대강 요령을 얻은 뒤, 도당(都堂)에 말하여 시험해 보자고 하였으나, 모두 믿지 않고 무선을 속이는 자라 하고 횡담까지 하였다. 여러 해를 두고 헌의(獻議)하여 마침내 성의가 감동되어, 화약국(火藥局)을 설치하고 무선을 제조(提調)로 삼아 마침내 화약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4년 4월 19일 임오 1번째 기사. 여기서 최무선의 화약 무기 사용 건의는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사기꾼이라고까지 폄하했다가 여러 해가 지나 비로소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조정 내에는 함선을 대대적으로 건조해 해상에서 왜구와 싸우는 것을 반대하고 육지에서 싸울 것을 주장하는, 소위 ‘육전론(陸戰論)’이 여전히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¹⁰⁾ 이런 상황에 육전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전투가 일어났다. 공민왕 22(1373)년 2월 27일, 경상도 도순문사 홍사우가 구산현(현재의 경남 창원시)에 침구한 왜적 수백 명을 참수하고 노획한 무기를 바치는 큰 전과를 올린 것이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2월 기해(27)일조.) 이로써 조정 내 육전론자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어서 같은 해 4월 27일, 이번에는 왜구들이 수도 개경과 가까운 섬까지 쳐들어왔다. 그런데 조정의 대처는 왜구들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토벌하는 것이 아닌, 동강(東江) 즉 예성강에 나가서 진(鎭)을 설치해 수비하게 하는 것에 그쳤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4월 무술(27)일조.)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은 그 뒤로도 이어진다. 5월 15일, 도총도감(都摠都監)을 설치하고 방리군(坊里軍)을 점검하였고(『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5월 병진(15)일조.), 또 왜구의 개경 침입에 대비해 도성 안의 민호를 점검하고 10호를 1통으로 삼고 각통에서 1인을 차출하여 방어를 담당하게 하되, 5일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고려사』 권제82. 공민왕 22년 5월조.) 이러한 조치는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10) 『고려사』 권제83. 공민왕 22년 5월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사람들에[議者] 따르면 적들은 배를 잘 타므로 수전(水戰)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만약 전함(戰艦)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을 거둬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무렵에 ‘반(反)수전론(水戰論)’ 즉 ‘육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관해서는 이영 「1364년 김숙명의 진해현 전투와 육전론」(『역사교육논집』 제70집, 2019년)을 참조.

공민왕 22년 5월, 이를 보다 못한 간관 우현보가 나서서 함선 건조를 건의한다.¹¹⁾ 그러나 조정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려사』 권제28. 열전 우현보.) 같은 해 6월 26일, 이번에는 약 8개월만에 또 다시 왜구의 선단이 동강과 서강에 모여서 양천을 노략질하고 육지에 상륙해 한양부까지 쳐들어가서 가옥에 방화하고 백성을 약탈하고 살해한다. 이 사태로 인근 수백 리가 소란스러웠고 개경 민심도 매우 불안해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6월 병신(26)일조.) 이색이 이미 예상한 바, “대개 육지를 지키고 바다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여겨 셀 수 없는 만큼 쳐들어올 것입니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홍무제의 함선 건조를 통한 왜구 대응 요구에 대해, 공민왕은 군사 기강을 점검하고 함선을 검열하며 불화살 발사 시험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의사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고려 조정은 수전론과 육전론으로 나뉘어져 있었기에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민왕 개인의 친명적인 입장과 태도에 반해, 고려 조정의 여러 신하들의 그것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따라서 홍무제가 고려에 대해 품고 있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켜갔다.

11) “사람들에[議者] 따르면 적들은 배를 잘 타므로 수전(水戰)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만약 전함(戰艦)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을 거듭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적(水賊)을 육지에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형세가 매우 분명합니다. 또한 적들을 물리치고 포악함을 금지하고자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백성들에 대한 작은 피해를 염려하여 나라에 큰 우환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동·서강(東·西江)에 모두 방수군(防守軍)을 배치하였지만, 적들이 바다로 의기양양하게 물러오면 우리 군사들은 해안에서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비록 정예군 백만이 있다한들 바다에서야 어찌 하겠습니까? 마땅히 전함[舟艦]을 만들어 무장을[器仗] 엄중하게 갖추고 물길을 따라 적들을 멀리 쫓아내어 요충지를 방어하면, 적들이 비록 물에 익숙하다 하여도 어찌 <바다를> 날아서 건너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형세가 유리하게 되면 적을 사로잡아 소탕하기 또한 반드시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제83. 공민왕 22년 5월조.

Ⅲ 3차 금왜 요구

홍무제의 고려에 대한 세 번째 왜구 금압 압력은 두 번째 금왜 요구가 있고 약 10개월 후인 공민왕 22(1373)년 7월에 있었다. 작년 12월에 명에 갔던 정몽주가 7월 13일에 홍무제의 조서를 가지고 귀국했다. 홍무제는 고려 사신들 앞에서 직접 선유(宣諭)하는 방식으로 고려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격정적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사료의 내용이 너무 많고 다양하므로 본 고의 논지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을 발췌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의 <사료 3-1>을 보자.

3-1. 임자. 찬성사 강인유, 동지밀직사사 김서·성원규, 판도판서 임완 및 홍사범, 서장관 정몽주 등이 명으로부터 돌아왔다. (중략) 20일 아침에 봉천문(奉天門) 아래에서 선유를 직접 들었는데, 이르기를, “(중략) 예전에 나이 든 원사(院使)와 두 환관(內侍)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배가 풍랑에 휩쓸려 어디론가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 겨우 돌아왔는데 ①손씨(孫氏) 성(姓)의 환관이 죽었다고 하면서 병사(病死)라고도 하고 자살했다고도 하였다. ②말하는 것이 달라서 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대의 국왕은 칼을 찬 사람들에게 매번 숙소 창문 밖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단속하게 했다고 한다. 그 환관이 말하기를, ‘나는 고려국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단속하는가?’라고 하였다. ③박씨(朴氏) 성을 가진 재상이 말도 듣지 않고 한동안 때리더니, 다시 독약을 주어 죽게 했다. 문밖으로 감히 나올 수 없어서 뒷담 위로 끌고 나와 버렸는데 특히 모자(帽

子)를 높은 나무 위에 걸고 시체는 나무 아래에 고의로 두었으며 ④독약으로 살해한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입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나서야 백성들이 와서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배에 머무르고 있는 군인들이 모르도록 단속했다고 한다.

그대의 국왕에게 전하라. (중략) 그림에도 ⑤그대가 그 환관[小火者]를 살해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절박하지는 않다. 그러나 ⑥이 환관은 그대의 나라에서 보내 온 사람도 아니고 그대의 나라에서 노역(差役)을 피해 도망 온 자도 아니다. 그는 우리가 원 조정에서 얻은 사람이니, 그를 살해한 것은 그대 나라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였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7월 임자(13)일조.)

이 사료의 ①“손씨(孫氏) 성(姓)의 환관이 죽었다.”고 한 것은 전년도인 공민왕 21(1372)년 5월 27조의 『고려사』 기록에 ‘자결’한 사실로 확인된다.¹²⁾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홍무제는 조서에서 자신이 고려에 파견한 환관(내시) 손 아무개를 고려의 재상인 박 아무개가 감시, 감금, 구타한 끝에 독살했다고 하면서 격노하였다. 그리고 ‘병사(①)’, ‘자살(①)’, ‘독살(③ ④)’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고려 측에 압력을 가했다. 위의 명 측 주장(② ③ ④)이 사실이라면 고려인으로 원나라 궁궐에 속해 있었던(⑥), 손씨 성의 환관은 명을 위해 활동하던 첩자로 고려가 자국의 기밀이 명에 알려질까,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격노한 홍무제의 조서는 이어진다.

12) “계유 손내시(孫內侍)가 불은사(佛恩寺)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5월 계유(27)일조.

3-2. “그대의 국왕에게 전하라. 곧 ⑦이렇게 나를 의심하면 성곽을 수리하고 군량을 사들이며, 활과 화살 · 포석(砲石) · 군마(軍馬)를 준비하여 곧 <우리를> 상대할 것이지 그대 사신들에게 정탐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듣기에 그대 나라의 성채가 방치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또 그대 나라에서는 군량을 비축함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니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았다. ⑧왜구가 매양 침입해오니, 그대는 곧 300~500척의 배를 준비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게 한다면, 곧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대들에 비해서 바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왜구가 오면 나는 사람을 보내 나포하게 했다. ⑨왜구를 잡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명주위(明州衛)의 대지휘(戴指揮)와 태창위(太倉衛)의 서지휘(徐指揮) 두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 또 ⑩어지휘(於指揮)를 보내 왜구를 잡아들이도록 하였는데, 나포한 왜구 가운데 젊은 왜인의 입을 찌르고 불알을 깬더니, 드디어 바다도 잠잠해지게 되었다.(앞의 주(12) 사료.)

홍무제는 자신이 장차 고려를 침공하지 않을까, 의심한다고 하여 공민왕을 힐난하면서 그런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군비를 갖추고(⑦), 함선 300-500척을 갖추서 왜구에 대비하라고 한다(⑧). 이는 왜구가 육지에 상륙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당시 고려 조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육전론’과 ‘수전론’을 놓고 홍무제는 명확하게 수전론을 강하게 지지하고 또 지시한 것이었다.

또 명에 침구한 왜구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장수 두 명을 사형에 처했으며(⑨), 붙잡은 젊은 왜구를 극형에 처했더니 더 이

상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게 되었다(⑩), 또 고려에 대해서도 자기처럼 왜구 문제에 대하여 강경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공민왕은 이미 전년도 10월에 들어와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여러 관리들에게 장형을 가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민왕 조정이 홍무제의 지시대로, 만약 군비를 갖추고 왜구 대비용 함선 300-500척을 건조하고 왜구를 막아내지 못한 장수를 극형에 처하는 등, 왜구에 대하여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홍무제가 고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살펴보자.

3-3. ⑩지극정성이면, 그대들 왕씨의 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벌한다 혹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망 사실의 이해관계로 판단하기 어렵다. ⑪그대들이 이처럼 지극정성이 없다면 나는 그대들을 정벌할 것이니, 이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지금 정벌한다 혹은 정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없으나, ⑫어쩔 수 없이 정벌해야 한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대 나라를 정벌할 것이다. ⑬내가 만약 그대를 정벌한다면, 명주(明州)에서 해선(海船) 500척을 만들고, 온주(溫州)에서 500척을 만들며, 천주(泉州)·태창(太倉)·광동(廣東)·사천(四川)에서 3개월 이내에 7,000~8,000척을 건조해서 당당히 원정해 갈 것이다. (앞의 주(12) 사료.)

⑩에서는 고려가 홍무제 자신을 대함에 있어서 지극정성이 없으면 고려를 정벌할 것이다, 고 단언하고 있다. 자신이 고려

를 정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고려가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그 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앞의 <사료 1>의 “㉑옛날에 수 양제(煬帝)와 같이 황망한 임금들이 영토를 넓히 고자 병사를 무리하게 일으켜서 후세의 비웃음을 받고 말았으 니, 내 마음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과거 수 양제의 고 구려 정벌을 들어서 은근하게 위협한 것이라면, 이제는 노골적 으로 협박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고려 원정군의 규모에 대해서도 중 국 각지에서 3개월 이내에 7천-8천 척의 선박을 건조해 고려로 쳐들어갈 것이다(㉒)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협박 하고 있다. 홍무제의 위협은 또 이어진다.

3-4. ㉓나는 충혜왕(波皮王)을 환관 용복(龍福)이 말 위에서 강제로 연행한 것과 같은 짓은 하지 않을 텐데 그는 부마였음 에도 이렇게 잡혀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나는 24세부터 홍군(紅軍)에 들어가 3년을 지 내는 동안 스스로 약간의 군마를 마련하고 성(城)을 수축(修築)하였으며, ㉔바다에서는 10,000척의 배를 건조했다. 이후 ㉕각지의 성곽을 모두 차지하였고, 원[大元]도 북방으로 몰아 냈다. 그러나 ㉖아직 오랑캐들을 멀리 쫓아내지는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대 나라를 도모하겠는가. 몽고 놈들 가운데 잡을 수 있는 놈은 잡고 추격할 수 있는 놈은 추격하여 천하가 태평 해져서 뽕과 삼이 들을 가득차고 사방이 부유하게 된 후에야 ‘외국’의 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앞의 주(12) 사료.)

위의 ㉓에서 충혜왕이 환관에게 말 위에서 강제로 연행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즉석에서 죽이겠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이처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공민왕의 공포심을 부추겼을 것이다.

또 ⑩에서는 자신이 젊었을 때, 이미 1만 척이나 되는 배를 건조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앞의 ⑭에서 배 7000-8000 척을 건조해서 고려를 침공하겠다는 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지의 성곽을 점령하였고 그 대단한 원 제국도 북쪽으로 쫓아낸 자신임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몽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 천하가 정리되면 그때 외국(고려)을 정벌하겠노라, 고 해(⑮) 고려 정벌의 시기에 대해서도 대략의 언질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홍무제의 언질을 고려가 단순히 언어의 유희 또는 거짓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국’이 비단 고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왜구 문제에 한해서 생각하면 왜구의 본거지 일본 역시 당연히 홍무제의 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5. ⑰대개 중국의 난(亂)은 제후(諸侯)의 복(福)인 것이다. 나는 일개 농민으로서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그대는 기자(箕子)의 나라, 신라와 낙랑군(樂浪郡)과 서로 비견되니,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지금은 그들이 모두 그대의 노비가 되었다. ⑱ 일전에 당 태종이 정벌하여 실패하였으니, 그들은 매양 정벌을 할 줄 몰랐다. 뒤에 당 고종이 그대 나라를 모두 멸했다. 뒤이어 홍건적(關先生)이 남녘을 잡아가고 법도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탐욕과 음탕함만을 일삼으니, 이 때문에 홍건적도 멸망하였다. ㉑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이 방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대 나라를 정정당당하게 정벌해 가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앞의 주(12) 사료.)

지금까지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듯, “⑩대개 중국의 난은 제후의 복이다.”고 했는데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의 치(治)는 제후의 재앙(災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는 제국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언급은 21세기 현대에도 통용된다.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홍무제 자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벌 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다, 고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나 명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고려와 일본, 베트남과 같은 중국 주변 국가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⑩에서 예전의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행하였다가 실패한 것과 그 후 당 고종이 성공한 사례, 그리고 수년 전 홍건적의 고려 침공이 실패한 이유 등을 거론해, 자신의 고려 정벌 계획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고려가 침공에 대비해 방비를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고려 정벌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⑪에서는 고려가 자국을 방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지만, 자기가 고려를 침공해가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3-6. (전략) 그대는 매양 사신을 요동 등지에 보내 오왕(吳王)과 서로 연회를 베풀고 또 포(布) 100필을 주게 하였다. 연회를 베풀고, 포는 일찍이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주었다. (중략) ㉒거기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본뜻은 정탐에 있었다. ㉓그대들은 1,000여 필의 말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또 나하추(納哈出)의 시종을 대동하고 와서 우리 군영의 내부 사정을 엿탐하고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 우리의 우가장(牛家莊)의 100,000마리분의 군량을 빼앗고, 이 공격으로 우리는 군마 3,000마리를 잃었다.

그대들이 올린 표문에서 이르기를, ‘저희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신하를 칭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니 짧은 생각이었다. 또한 ㉔서총병(徐摠兵)과 연회를 베풀으나 이는 진의가 아니라 고의로 평북부(北平府) 군관(軍官)들의 사정을 정탐하려는 것이었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이 짧으니 어떻게 할 셈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以小事大]은 예로부터의 내려오는 예(禮)가 아닌가. ㉕지극한 정성이 적지 않은가.(앞의 주(12) 사료.)

여기서도 홍무제는 계속해서 고려의 첩자 활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㉑ ㉒ ㉓ ㉔) 특히 북원의 잔여 세력인 나하추가 우가장을 공격해 명군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을, 고려가 명군의 내부 사정을 엿탐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준 결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홍무제로 하여금 고려가 지극한 정성이 부족하다(㉕)고 하는 느끼게 하는 이유였다.

3-7. 내가 이전에 1척의 배를 보냈더니, 당시 그대들은 허다한 병사들을 무장시킨 후에 우리 배를 맞았다고 하니, 어디에

그런 예절이 있는 것인가? ㉔배 1척이 아니라 10척의 배가 가더라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듣자하니 ㉕왜구가 200~300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도 다스리지 않고, 허물어진 성벽도 내버려 두고, 성지(城池)도 수축(修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의혹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㉖내가 그대 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면 공명정대하게 그대 나라에 대한 정벌에 나설 것이다. ㉗오랑캐를 멀리 몰아낸다면, 5년 내에 정벌하지 못하더라도 10년 내에 정벌할 것이다. 그대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려 하면 지금 오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오지 말라. 그대의 국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였다.(앞의 주(12) 사료.)

홍무제는 고려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㉔)을 비난하고, ㉕에 대해서는 고려가 일부러 왜구를 방치 내지는 방조해 그들로 하여금 중국까지 쳐들어가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의심하고 있다. 이는 마치 임진왜란 발생 초기 명나라 신종 황제가 조선과 일본이 서로 싸고 명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품었던 것과 유사하다.

홍무제가 왜구 문제로 고려에 대하여 품었던 의혹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고는 하기 어렵다. 당시 고려는 북쪽 국경의 북원과 명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국방의 주력을 집중하느라고 왜구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¹³⁾ 홍무제는 이점을 간파하고 고려가 명나라에 대하여 의혹을 품지 말고 왜구 대비에 국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13) 예를 들어 우왕 3(1377)년 9월, 정몽주를 일본에 파견할 당시의 사료에 의하면, (고려는) “북쪽에 원과 서쪽에 명과 국경이 접해있어서 해적들의 침구에 대해서는 오로지 연해 주군에게 방어를 일임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려사』 권제133. 열전 권제46. 우왕 3년 9월조.

마지막으로 홍무제는 고려를 정벌할 시기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오랑캐를 멀리 몰아낸 후, 빠르면 5년 이내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고려를 정벌할 것이다(㉘ ㉙), 고 하고 있다. 명이 복원을 멀리 몰아내는데 어느 정도 세월(a년)이 걸릴지, 당시 고려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빠르면 (5+a)년, 늦어도 (10+a)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⁴⁾ 이러한 고려 정벌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자, 고려는 명 태조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공민왕 22(1373)년 7월 13일에 정몽주가 전달한 홍무제의 조서는 불과 약 10개월 전 2차 금왜 요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조서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두 번이나 고려의 자신에 대한 의혹, 고려 정벌, 왜구 금압 요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홍무제의 불만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려가 왜구 토벌에 대해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IV ● 고려의 대응

홍무제의 고려 침공 협박은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고려가 명나라에 다른 생각을 품고 왜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왜구들로

14) 실제로 복원의 잔여 세력인 나하추가 명나라에 항복한 것이 1387년이고 다음 해인 1388년 3월에 명나라가 고려의 철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의 영토였으므로 명에 속해야 한다며 철령위를 설치한다고 통보해오자, 고려는 4월에 요동 정벌을 결정한다. 공민왕 22(1373)년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여금 명나라를 침공하도록 방치 내지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홍무제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왜구 토벌에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구들의 침공도 해가 갈수록 더 위협적이 되어갔다. 공민왕 22(1373)년 7월, 왜적이 수도 개경의 입구인 한강 하구의 대안(對岸)에 위치하는 교동(道)에 침구한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7월조.) 이어서 같은 달에 서강(예성강)에도 침입한다.(『고려사』 권제82. 공민왕 22년 7월조.) 공민왕은 마침내 홍무제의 왜구 금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다음 <사료 4>를 보자.

4. 겨울 10월. 을해. 찬성사 최영을 육도도순찰사(六道都巡察使)로 삼고 장수와 수령을 출척(黜陟)하고 군호를 편성하며 전함을 건조하고, 죄 있는 자는 모두 바로 처단하게 하였다.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 7일조.)

여기서 <전함을 건조하고>는 앞의 <사료 3-2>의 홍무제의 지시 사항인 “⑧왜구가 매양 침입해오니, 그대는 곧 300~500척의 배를 준비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게 한다면, 곧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는 모두 바로 처단하게 하였다.>고 하는 기사는 앞의 <사료 3-2>의 ⑨의 왜구를 잡지 못한 명나라의 관료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한 사실에 대응한다. 설사 명나라의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민왕의 새로운 왜구 대책(전함 건조 계획)에 혹시 제동을 걸려고 시도할지도 모를 세력에 대하여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조치로 생각된다.

이후 이어지는 공민왕의 군사적 행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민왕 22(1373)년 10월 국왕의 군사적 행보 및 왜구 대책

	월일	사료의 내용
①	10월 8일	병자. (국왕이) 서강성(西江城)에서 숙박했다.(『고려사』 권제 44. 공민왕 22년 10월 8일조.)
②	10월 9일	정축. 새로 건조된 전함을 보고 또 화전(火箭)과 화통(火筒)을 시험하였고, 밤에는 마장(馬場)에 유숙하였다.(『고려사』 권제 44. 공민왕 22년 10월 9일조.)
③	10월 11일	기묘. 동강성(東江城)에 행차하다가 마침내 증산(甑山)에서 묵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 11일조.)
④	10월 17일	최영이 양광도도순무사 이성림이 능히 왜적을 막지 못했음을 이유로 장형에 처한 후 봉졸(烽卒)에 속하게 하고, 그 도진무(都鎭撫) 지심은 참형에 처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 17일조.)

불과 2-3 달전, 왜구가 침구한 서강에 위치한, 서강성에서 국왕이 친히 와서 숙박까지 하는,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왜구 토벌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 날에는 서강성의 마장에서 유숙하고 다음 날에는 동강성에도 행차한다. 서강성에서는 새로 건조한 전함을 사열하고 화전과 화통 등 화약 무기를 시험하였다. 1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화통’이 새로 화약 무기로 등장한다. 또 최영은 왜적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양광도 도순무사라고 하는 고위 관료에게 장형을 가하고 봉졸로 강등시키며 그 부하는 참수형에 처하는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경함과 단호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수군 재건에 반대하던 조정 내의 육전론자들에 대한 시위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료 5>를 보자.

5. ㉔ <검교중랑장(檢校中郎將) 이희(李禧)가 상서하기를, “지금 왜구의 침략이 치열한데, 이에 연호(烟戶)의 백성으로 배타는 것을 익히지 않은 자를 몰아다가 수전(水戰)을 하게 하니 매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臣)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찍부터 수전에 익숙합니다. ㉕원컨대 해도(海島)에서 나와 사는 사람과 스스로 지원한 사람으로 배를 부리는데 익숙한 자들을 거느리고, 이들과 더불어 적들을 공격하게 해주신다면, 5년을 기약하여 해도(海道)를 영구히 맑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랑장 정준제 또한 상서(上書)하여 계책을 올렸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이희를 양광도 안무사 겸 왜인추포만호로 삼고, 정준제를 전라도안무사 겸 왜인추포만호로 삼았다. 이희의 반당(伴尙) 67인과 정준제의 반당 85인에게 모두 첨설직(添設職)을 주었다. 또한 밀직사(密直司)로 하여금 공명(空名) 천호첩(千戶牒) 20장과 백호첩(百戶牒) 200장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㉖처음에 6도도순찰사 최영이 배 2,000척을 건조하여 6도(道)의 군사들로 배를 타고 왜구를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집을 허물고 역(役)을 도피한 자가 10 가운데 5~6이나 되었는데, ㉗정준제 등의 건의에 따라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고려사』 권제83. 지권제37. 병3. 선군.)

㉖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집을 허물고 역(役)을 도피한 자가 10 가운데 5~6이나 되었는데,”는 즉, <사료 4>의 공민왕

22(1373)년 10월 7일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또 ㉑은 공민왕 23(1374)년 1월의 상황이므로,¹⁵⁾ ㉑의 이희와 정준제의 건의와 최영 주도하의 200척 건조 계획이 중단된 것(㉒ ㉓)은 대략 1373년도 10월 7일-1374년 1월 사이의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최영의 권위와 위신이 실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왕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공민왕 23(1374)년 3월 29일, 이번에는 우왕이 최영을 경상전라양광도도순문사로 삼는다.¹⁶⁾ 이번에는 ‘육도(六道)의 도순찰사’가 아니라 ‘삼도(三道)의 도순문사’다. 그러자 헌사가 최영의 도순찰사로서의 파견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고, 이에 우왕은 일단 헌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해 최영의 경상도 도순문사 임명을 취소하였지만, 오히려 그에게 ‘진충분의선위좌명정난공신’이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그를 비판한 대사헌 김속명을 파면한다.¹⁷⁾ 왜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삼도의 도순문사로 임명했지만, 헌사가 반대하자, 경상도만 별도로 하고 여전히 전라와 양광의 ‘이도(二道)의 도순문사’ 임명은 취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불화살, 화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이해 (1373년) 11월에는 명나라에 대하여 화약과 병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¹⁸⁾

15) <사료 5>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고려사절요』 공민왕 23년 1월조에 보이므로 동일한 상황을 가르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을미, 최영을 경상전라양광도도순문사(慶尙全羅楊廣道都巡問使)로 삼으니, 헌사(憲司)가 아뢰기를, ‘최영은 일찍이 도순찰사로 삼았었는데, 6도가 소동이 일어났으니 다시 파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3년 3월 을미(29)일조.

17) “최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사헌 김속명을 파직시켰고, (중략) 개성부사 전녹생을 최영 대신 경상도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임명하였다. 또한 최영에게 진충분의선위좌명정난공신(盡忠奮義宣威佐命定亂功臣)의 칭호를 하사했다.”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3년 4월조.

18) “을축 밀직부사 장자온이 주영찬을 대신해 명 수도[京師]에 갔다.”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1월 을축(28)일조의 기사로 볼 때, 이 화약 요청은 장자온이 명나라 수도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된다.

6. 이달에 중서성(中書省)에 자문하여 화약을 내려줄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왜적이 난을 일으키며 출몰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연해 주군의 요새에는 군사를 배치하여 방어만 하도록 하고, 바다에 나가 추격하여 나포하지 않았습니니다. ㉡최 근에는 왜적의 기세가 매우 맹렬하므로, 이제 바다에 나아가 추격하여 나포함으로써 백성들의 우환을 근절하게 하고자 ㉢관리를 파견하여 왜적을 나포할 함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사용할 병기·화약·유황·염소(焰硝) 등의 물품을 조달할 수 없어 의논이 〈명〉 조정에 부탁하게 되었으니, 하사해 주시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1월조.)

공민왕 22년 11월의 <사료 6>의 ㉠에서 고려는, 왜구들이 쳐들어와도 바다에 나가 추격하여 나포하지 않았다고 하며 (홍무제가 누차 지적해왔던 대로) 왜구 대응의 소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왕 3(1377)년 9월, 정몽주 일본 파견 시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명과 북원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홍무제의 고려에 대한 지적은 정확한 것이었다.

어쨌든 ‘왜적의 기세가 최근 매우 맹렬하므로 바다에 나아가 왜선을 나포해 백성들의 우환을 근절하기 위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약 3년전에 보내온 조서에 실리 바, 고려 백성들의 삶을 몹시 걱정하는 ‘어진 황제’ 홍무제의 지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¹⁹⁾

19) 이에 관해서는 홍무제가 고려의 국정에 관한 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 속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공민)왕도 알다시피 중고(中古) 이래로 천자와 제후는 요충지나 험준한 곳에

또 ‘관리를 파견해 왜적을 나포할 함선을 건조하고 있다. (㉞)’는 “왜구에 대비해 300에서 500척의 배를 준비해 왜구를 막을 것(<사료 3-2>의 ⑧)”을 요구한 홍무제의 지시에 상응한 대응이다.

이처럼 홍무제의 고려 내정(內政)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수궁하는 태세를 취해 그의 나르시시즘에 최대한 부응함으로써 그를 흡족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㉞의 “그 배에 사용할 병기 · 화약 · 유황 · 염소(焰硝) 등의 물품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고려 외교의 노련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고려의 외교에 대한 명나라 중서성과 홍무제의 반응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7. “또 다른 자문에 이르기를, ‘홍무 7년(1374) 5월 4일 보내 온 자문을 받았는데 왜선을 나포하기 위한 함선의 건조에 사용할 병기 · 화약 · 유황 · 염초(焰炒) 등 물품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피건대 ㉠고려국에서 왜선을 나포하기 위해 건조하는 함선이 바다에 나아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약 · 염초 · 유황의 예비분이 많기는 하나 쓰임새 또한 많습니다. 어찌 중국의 소용이 있는데 외국으로 사용하겠습니까?’

홍무 7년 5월 8일 중서성 · 대도독부(大都督府) · 어사대(御史臺)의 관리가 봉천전(奉天殿)에서 성지를 받들기를, ‘㉢고려

방어 시설을 설치하여 자기 나라를 지켜왔다. 지금 왕에게 민은 있지만, 성(城)이 없으면 민들의 목숨은 장차 위태로워질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 중에서 일찍이 군대를 버린 자는 없었는데, 지금 왕이 군비(軍備)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세가 장차 위태롭게 될 것이다. 민은 식량으로써 하늘을 삼는데, 지금 왕의 바닷가 지역이 경작되지 않는다면 민의 식량은 장차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고려사』 권제42. 공민왕 19년 5월조.

에서 공문을 보내 왜적을 체포할 함선에 소용되는 병기와 화약을 요청해 왔다 하니, 내가 보기에 매우 기쁜 일이다. ㉞예전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바야흐로 겨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갖게 되어 중국에 공문을 보내 온 것이다. ㉟왕전(王顥, 공민왕)이 정말 내 명령을 따를 의사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이러한 명령들을 내려 보내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따를 것이다.

㊱빨리 문서를 발송해 그곳에서 초(硝) 500,000근을 수집해 모으고 유황 100,000근을 구해서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에 섞어 쓸 다른 약을 배합해서 고려로 보내 줄 것이다. 또한 ㊲왜적을 체포할 함선을 새로 건조하면 유능한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함선을 인솔해 와서 나에게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서성의 어사대관(省臺官)이 아뢰기를, “㊳그 나라에 그런 물건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니, 또 성지(聖旨)를 내리기를, “㊴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나라인데, 어찌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려에는 없겠는가? 이러한 물품은 어느 곳 에나 있는데, 다만 배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너희 재상들은 이런 명령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3년 6월조.)

앞의 <사료 3-2>의 ㉞의 홍무제 조서 내용과 달리, 명나라 중서성(中書省)은 고려의 화약 및 화약 병기 지원 요청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홍무제의 지시에 반하는 것으로 그의 권위에 저촉된다. 또 ㉟은 고려로 하여금 왜구의 침구를 막으라고 요구한 홍무제의 지시와도 어긋난다. 이처럼 고려의 화약과 화포 등 병기 지원 요청에 대한 명의 중서성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고려의 함선 건조 능력에 대한

의문과 자국에서 사용할 화약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즉 불과 몇 개월 전에 조서를 보내어 “수년 안에 정벌하겠노라.”고 협박한 가상 적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고려에게 당시 최첨단 무기인 화약과 화약 병기들을 건네준다고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홍무제의 결정은 달랐다. 그는 무엇보다도 고려가 자기가 지시한 바를 이행하려고 하여 병기와 화약을 요청해온 것에 무척 흡족해했다(㉞). 그리고 그러한 고려의 태세 변화(㉟) 역시 예전에 자기가 지시한 바였다.(앞의 주(19) 사료)

홍무제는 고려의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아주 기뻐하고 흡족해하면서 “㊲왕전(王顥, 공민왕)이 정말 내 명령을 따를 의사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이러한 명령들을 내려 보내라. 그러면 그는 반드시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설사 ㊳의 증서성의 부정적인 견해가 옳은 판단이었다고 해도, 홍무제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고려가 북원 세력과 결탁해 요심 지역의 회복을 기도한다거나,²⁰⁾ 또 아직 안정되지 않은 명의 국경을 위협하는 대신에, 국력을 기울여 왜구 방어에 주력한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 즉 동시에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홍무제의 결정에 증서성의 어사대관(省臺官)가 “㊴그 나라에 그런 물건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주저하자, 홍무제는 “㊵이러한 물품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다만 배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강조하였다.

초 50만근과 유향 10만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㊶)과 왜

20) 이 점에 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기회를 빌어 논하고자 한다.

적을 체포할 함선을 새로 건조하면 그 배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보이려고 하는(㉟) 홍무제의 지시에 고려가 따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쯤 명의 화약이 실제로 고려에 전달되었는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홍무제가 고려에 대하여 화약과 화기를 지원한 사실은 확인된다.²¹⁾ 다음 사료를 보자.

8. “ (전략) 고려 말년에 왜구가 더욱 성해서 (중략) 황송 하옵게도 태조 고황제께옵서 소국(小國)의 환난을 살펴 아옵 시고 홍무 2년 10월에 글[書]을 주셨사온데, 그 가운데에 ‘근자 사신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바닷가를 지나는데 바다에서 50 리 혹은 3, 40리 거리가 되어야 백성이 바야흐로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므로, 짐(朕)이 그 연고를 물으니, 왜놈의 소요(騷擾)로 인해서라고 말한다.’ 하였삽고, ㉠홍무 6년 10월에는 왜 적의 작란(作亂)으로 인해서 왜적을 잡는 선척(船隻)에 소용되는 화약을 청하였삽고, ㉡홍무 7년 5월에는 화포(火砲)와 화통(火筒)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물자를 하사하였사온데, ”²²⁾

21) 『세종실록』 56권, 세종 14(1432)년 5월 16일 계유 3번째 기사.

“(전략)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 공민왕때에 화약(火藥)을 달라고 주청하였더니 명나라의 고황제(高皇帝)가 특히 화포(火砲)와 화약을 하사하였다. 이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큰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왜적(倭賊)과 이웃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전함(戰艦)을 준비하였으나, 그러나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미 부패(腐敗)하게 되었으니 대체로 공장(工匠)의 조선 기술(造船技術)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마땅히 먼저 고황제가 화약을 하사한 옛일을 기록하고, 이에 배 짓는 훌륭한 기술자를 청하여 왜구를 막을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중국 조정에서 비록 황제에게 주청하지 않고자 할지라도 고황제의 화약 하사의 일이 씌어 있기때문에 반드시 막지 못할 것이다. (후략) ”

『세종실록』 65권, 세종 16(1434)년 9월 9일 계미 3번째 기사.

“염초(焰硝)를 무역하는 일을 전에 의논한 대로 사목(事目)을 써서 천추사 박신생에게 보내고, 인하여 예부(禮部)에 보내는 글의 초본(草本)을 닦아 부치니, 그 글에 이르기를, ‘본국에서 공연히 태조 고황제께서 중국이나 외국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일체로 사랑하시는 은의를 입어, 일찍이 홍무(洪武) 연간에 왜적을 잡는 데 쓰는 화통(火筒)· 화약물(火藥物)을 만드는 원료를 나누어 보냈으나, 본국의 공장(工匠)들이 염초(焰硝)를 고아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제조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오매, 이제 값으로 매수하고자 하옵는데,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시행하기를 글을 올려 청하옵니다.’ 하였다.

22)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1443)년 8월 8일 경인 1번째 기사.

㉠는 위의 <사료 6>을, ㉡는 <사료 7>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약 지원이 곧바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조정의 결정에 홍무제는 너무 기뻐기 때문이었을까? 홍무제는 화약 제조법이라고 하는 특급 기밀 중 일부를 누설하기도 한다. 즉 ㉢의 “빨리 문서를 발송해 그곳에서 초(硝) 500,000근을 수집해 모으고 유황 100,000근을 구해서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에 섞어 쓸 다른 약을 배합해서 고려로 보낼 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고려는 화약 제조 시 초와 유황의 배합 비율이 5:1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는 ‘초’와 ‘유황’에 따라 섞어 쓸 다른 약의 성분과 그 배합에 대한 비결이다. ㉣이러한 물품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다만 배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에서 보듯이, 홍무제는 고려가 이러한 배합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미 중국 강남에서 온 상인과의 교류를 통해 화약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이미 지니고 있던 최무선으로서는 명에서 받은 완성된 화약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홍무제는 고려가 이미 화약 제조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대명 외교가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되었는지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최무선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홍무제의 화약과 화포 지원을 이끌어낸 결과, 고려는 드디어 우왕 3(1377)년 10월 화통도감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우왕 6(1380, 경신)년 8월, 금

강 하구인 진포구(鎭浦口)에서 왜구의 500척 대선단을 화공으로 불사르는데 성공한다.(『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조.)

이후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중부 서해안 지역에 정박해 내륙 깊숙이 침공해들어오는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이영, 2021) 이어서 우왕 9(1383)년 5월 정지가 남해 관음포 해전에서 47척으로 적선 120척 대선단과 맞서서 화공으로 적선 17척을 불사르며 승리한다.(『고려사절요』 권32. 우왕 9년 5월조) 그 결과, 왜구들은 남해안으로의 접근도 회피, 동해안에 상륙해 말을 타고 내륙 깊숙이 들어와 전전하면서 약탈하는 형태로 전환한다.(이영, 2021) 이러한 약탈 방식은 예전에 비해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한반도 대부분의 농경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또 전국의 조운선(漕運船)이 집결하는 중부 서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고, 또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남해안 지역에도 안심하고 침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왕 9년 이후, 왜구의 침공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한반도에서의 왜구의 약탈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일본의 반란 세력, 즉 남조 세력이 규슈에서의 전투에 필요한 병량(兵糧)을 이전과 달리, 더 이상 안심하고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왕 3(1377)년 9월 일본으로 건너온 정몽주와 회담을 한 규슈탐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은 마침내 우왕 5(1379)년 가을, 대병력을 동원해 정서부의 본거지 기쿠치(菊池) 분지 일대를 포위하고 병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효로 제메(兵糧攻め)’ 전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이영, 2008)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우왕 6(1380)년 6월, 500척의 대선단으로 병

량을 구하기 위해²³⁾ 고려로 떠났던, 아지발도(阿只拔都) 휘하 정서부의 다카기(高來)와 아마쿠사(天草)의 수군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왕 7(1381)년 6월, 약 2년 가까이 포위 공격을 버텨오던 정서부의 본거지 기쿠치 와이후성(隈府城)이 마침내 함락되었다. 크게 세력이 약화된 정서부는 이후 더 이상 눈에 띄는 저항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항복한다.

요시노(吉野) 조정의 유일한 희망은 규슈에서의 군사적 우세였다. 그런데 규슈에서마저 군사적 열세에 처하게 된 지금,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해(1392년), 일본도 60년 넘게 지속된 남북조 내란이 막을 내렸다.

V 결론

본고는 공민왕 대의 수군 재건을 통한 적극적인 왜구 대응이 고려 말 왜구 금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 성과에 입각해 공민왕 22(1373)년 10월에 고려 조정이 예전 방침과 달리, 갑자기 정책을 전환한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으로 도주한 원 및 새로 중원의 패자(霸者)로 등장한 명과 고려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공민왕 조정은 친원과 친명의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홍무제는 고려의 이러한 대명(對明) 자세에 불만을 품고 침공 위협을 반복했다.

23)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鎭浦)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 하였으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면서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한 자나 쌓였다.” 앞의 주(65) 사료.

홍무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려가 여러 차례 홍무제가 제시한 바, 왜구에 대한 적극적이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홍무제가 고려에 대하여 요구한 대로, 함선 300-500척을 건조해 해상에서부터 왜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다. 고려는 홍무제의 누차에 걸친 금왜 요구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급전환한다. 공민왕 22(1373)년 10월, 마침내 수군 재건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최영이 중심이 되어 착수한 무리한 수군 재건 작업은 곧바로 당시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러자 공민왕은 때마침 이희와 정지(준제)의 합리적인 수군 재건축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시한, 단순히 바다와 배 조종에 익숙한 연해도서관을 수군으로 삼는 것만으로 해전에 능숙한 왜구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그동안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화약 제조에 주력해왔던 최무선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다. 고려 조정은 왜구 대응에 화약과 화포 등 병기 사용을 주장하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명에 화약과 화포의 지원을 요청한다.

자신의 거둬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미온적이고 애매한 태도로 임하자, 실망하고 분노하던 홍무제는 고려의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에 크게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리고 증서성의 화약 지원 반대를 뿌리치고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다. 노련한 고려 외교의 승리였다.

이러한 대명 외교의 성과가 있는 직후, 공민왕은 암살당한다. 그렇지만 최무선의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 홍무제의 화약과 화포 지원을 이끌어낸 결과, 고려는 드디어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이후 왜구와의 여러 차례 해전에서 승리를 거듭해 한반도 연해에서의 제해권을 회복한다. 이처럼 고려의 대명(對明) 외교는 대일(對日) 외교의 성과 못지않게 왜구 금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왜구의 쇠퇴는 달리 말하면 규슈 남조 세력의 군사력 약화를 의미했다. 요시노 조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규슈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세가 사라지자, 더 이상의 항전은 무의미했다. 이처럼 고려의 대명 화약 외교의 성과는 60여년 동안 이어진 남북조 내란의 종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준비 부족과 지면(紙面) 제약으로, 공민왕의 수군 재건 정책,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의 북방 중시 정책에서 남방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요인, 예를 들면 당시 공민왕이 처해있었던 내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과제로 삼고자 한다.

□ 논문 투고 일: 2024.07.29.

□ 심사 완료 일: 2024.08.14.

□ 게재 확정 일: 2024.08.16.

참고문헌

- 『고려사』 권제133. 열전 권제46. 우왕 3년 10월조.
『고려사』 권제115. 열전 권제28. 이색.
『고려사』 열전 권제28. 우현보.
『고려사』 권제42. 공민왕 19년 5월조.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4월 임인(25)일조.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9월 임인(18)일조.
『고려사』 권제67. 공민왕 21년 11월조.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1월 신미(28)일조.
『고려사』 권제67. 공민왕 21년 11월조.
『고려사』 권제43. 공민왕 21년 11월 임신(29)일조.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2월 을해(3)일조.

- 『세종실록』 56권, 세종 14(1432)년 5월 16일 계유 3번째 기사.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1443)년 8월 8일 경인 1번째 기사.

이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2년(1376)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4집. 2006년.

이영,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왜구-공민왕 15년(1366)의 금왜 사절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사연구』 26집. 2007년.

이영, 「고려 말의 왜구와 남조, -경신년(1380)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집. 2008년.

이영,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과 대책」, 『동북아문화연구』 제31집.
2012년.

이영, 「고려 우왕 원년(1375)의 나홍유 일본 사행의 외교적 성과」,
『한국 중세사 연구』 47호. 2016년.

이영, 「고려 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 지배권의 장악」, 『동북아 문화
연구』 48집. 2016년.

이영, 「1364년 김속명의 진해현 전투와 육전론」, 『역사교육논집』
제70집. 2019년.

이영, 「진포구 · 남해 관음포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제64호. 2021년.

A dark grey, irregularly shaped graphic resembling a brain or a cloud, containing the word 'Abstract' in white text.

Abstract

**The demand for a crackdown on Japanese pirates by
the Emperor Hongwu of the Ming Dynasty and the
response of the Goryeo Dynasty**

Yi, Young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at active response to Japanese pirates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naval forces of King Gongmin's army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oppression of Japanese pirates at the end of Goryeo, this paper reviewed the background of the sudden change of policy in October 1373 of King Gongmin's 22nd year, contrary to the previous policy.

In the background, there was a new situation that Yuan dynasty, which fled to the North, and Ming who emerged as the new ruler of the mainland China, encountered the border with Goryeo. And Hongwu's demand for a crackdown on Japanese pirates.

In order to dispel Hongwu's strong and specific threat of invading Goryeo, the Goryeo government had to take aggressive anti-Japanese pirate measures, unlike before, in response to his demand for a

crackdown on Japanese pirates. It was to actively defend Japanese pirates from the sea by building 300-500 ships that Hongwu demanded for Goryeo.

King Gongmin's 22nd year(1373) finally began rebuilding the naval force in October.

| **Key Words** | Emperor Hongwu of the Ming Dynasty demanded that Goryeo suppress Japanese pirates, Reconstruction of the navy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min, Debate on land warfare and naval warfare, Choi Mu-seon's plan to suppress Japanese pirates using gunpowder and firearms.